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3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 박수민・이헌승・김소희

강명구 • 이인선 • 김선교

이재관 · 김민전 · 고동진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및 해제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도지사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해제할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확위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 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5.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

게 된 경우(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 단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 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도지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한다.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업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환원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 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 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 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 4.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5.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